



보건복지부

# 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(변경) 안내

## 1. 관련근거

- 기초의료보장과-1891(2020.4.2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진단 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”

2. 위와 관련하여,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누658 핵산증폭 중 SARS-CoV-2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(고시 제 2022-121호, '22.5.23.시행) 1.가.1)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,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### ?진단검사비 명세서

- (청구방법)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)에 “3/02” 기재
- (본인부담금)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
  - 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며,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

### ?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

- (청구방법)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8(본인부담 구분코드)에 “M099(코로나19 국비지원 진단검사 시 동시 진료한 진단검사 외 외래진료(1종))” 을 기재
- (본인부담금) 환자 본인부담 면제(전액 의료급여기금 부담)

### ? 진료확인번호

-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

- (적용시기) 2023.2.15.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
  - \*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.2.24.부터 가능

붙임.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분리청구 관련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

# 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

민간전문가

김현재

행정사무관

김행미

기초의료보장과장

전결 02/10

백진주

협조자

시행 기초의료보장과-872 2023.02.10. 접수 2023.02.10.  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gus8414@korea.kr  
전화 044-202-3098 전송 044-202-3951 / gus8414@korea.kr / 비공개(6)  
위험할 땐 119, 함겨울 땐 129